전통사찰 보수·정비 지원-전통사찰 보수 정비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
사업기간	☑연례반복
사업내용	○ 전통사찰 법당시설, 선원 및 선방, 전각, 부대시설 등 개·보수
사업비	1,907,500천원 (국비)1,362,500천원 (시비)545,000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545,000천원 〔기타〕545,000천원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무하보부	무화정책과	김경탁	임석진	도근호
군 와근구	한 의 / 8 / 의 의	2133-2510	2133-2520	2133-2522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(D A)*100/A
				(B-A)*100/A
계	(x1,328,000)	(x1,362,500)	(x34,500)	(x3)
	1,992,000	1,907,500	△84,500	△4
자치단체자본보조	(x1,328,000)	(x1,362,500)	(x34,500)	(x3)
	1,992,000	1,907,500	△84,500	△4

(단위 : 천원, %)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	2021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전통사찰 보수정비 1,907,500,000원		=	1,907,500천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, 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

□ 사업근거

○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보조금)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 60개소 (신청사찰 중 문체부에서 지원대상 선정)

○ 사업기간 : 2021.1~12

○ 사업내용

- 전통사찰 법당시설. 선원 및 선방 등 전각 및 부대시설 개보수

○ 부담비율 : 국비(40%), 시비(20%), 구비(20%), 사찰 자부담(20%)

○ 총사업비 : 1,907,500천원(국비 1,362,500천원 / 시비 545.000천원)

□ 추진경위

○ '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의거 199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대상사찰을 선정하여 사업시행

- 전통사찰 보수 : 1997년~ / 방재시스템 구축 : 2012년~ / 방재시스템 유지·보수 : 2015년~

□ 2021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.907.500 시행지침통보 0 시행지침 통보 2021.02~2021.02 2021.03~2021.03 지원계획 수립 0 지원계획 수립 교부 및 보수.정비시행 2021.04~2021.12 1,907,500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시행 정산보고 2021.12~2021.12 0 정산보고

(단위: 천원)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○ 보수정비 : 8개 사찰
2019년도	○ 보수정비 : 12개 사찰
2020년도	○ 보수정비 : 9개 사찰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사찰 풍치 및 미관 보존
-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7	(x920,000) 1,379,000		(_X -)	(x920,000) 1,379,000	(x920,000) 1,379,000		(x-) 0
2018	(x994,000) 1,491,000		(X-)	(x994,000) 1,491,000			(x-) 0
2019	(x1,240,000) 1,860,000		(_X -)	(x1,240,000) 1,860,000		(_X -)	(x-) 0